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 세부현황(94건)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시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Ι. | 획일적인 기준 합리화 (19건) | | |
| 1 | ○ 여객선의 선령 완화 등 선령 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-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20년인 여객선의 선령(선박의 연령)제한을 완화(예 : 30년) - 획일적인 선령 연장기준(1년 단위)도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검토(예: 1~3년 단위) ※「해운법 시행규칙」 | 기업비용 절감 (연 200억원) | 시행규칙 개정 (2008. 11.) |
| 2 | o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높이의 일률적 규제 폐지 -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·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 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,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결정되도록 개선 ※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| 지역개발 활성화 | 지침 개정 (2008. 8.) |
| 3 | o 선원 승하선시 신고절차 다양화 - 선주 등이 매번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선원승하선 신고절차에 간편한 팩스·인터넷 등의 신고방법을 도입 ※「선원법 시행규칙」 | 기업부담 감소 | 시행규칙 개정 (2008. 12.) |
| 4 | 철도차량 정밀진단 기간단축 철도차량 진단단위를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정밀진단 계획서 작성과 정밀진단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 ※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| 사업기간 단축 (45일 →30일) | 고시 개정 (2008. 10.) |
| 5 |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 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 국제항공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배분하는 기준 및 절차를 항공법에 명시 ※「항공법」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 마련(장관방침), 항공교통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| 배분과정의 공정성 확보 | 법률 개정 (2009. 12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 | ○ 운전자 적성 자가검사기관 지정취소・정지 요건 명확화 -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과 정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,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도 공개 ※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7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공급기준 결정체계 개선 화물자동차의 대수, 운임 등을 산정하는 화물자동차 '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'구성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※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| 공급기준 결정 투명성 확보 | 지침 개정 (2008. 12.) |
| 8 | ○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 -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5일에서 15일로 지정하여 충분한 납부 준비기간 부여(5일 → 15일) ※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| 경제적 부담 감소 | 고시 개정 (2009. 1.) |
| 9 |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개선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※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| 무분별한 감면 적용 방지 | 고시 개정 (2009. 1.) |
| 10 | ○ 포락지 조사기관 지정운영제도 개선 -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 등 개발주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포락지 조사기관에 대한 제척・회피제도 마련 ※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| 개발주체와의 유착 제거 | 고시 개정 (2008. 8.) |
| 11 | 토지적성평가 검증방법 보완 골프장, 스키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※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| 난개발 방지 | 지침 개정 (2008. 12.) |
| 12 | ○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내용 제한 개선 - '임대 등의 목적'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・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 ※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| 허가내용 명확화 | 시행령 및 고시 개정 (2008. 12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3 | ○ 농・임업 토지 공동 및 공유지분 취득요건 개선 - 타인 간 공동경영과 농업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의 농지 취득 가능성을 넓히는 규정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취득 및 공유지분취득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※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| 기준 명확화 | 훈령 개정 (2008. 9.) |
| 14 | 건설기계 검사시설 정기점검제도 폐지 법령에 근거 없이 매년 시·도지사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을 점검하도록 한 정기점검제도 폐지 ※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 | 기업부담 완화 | 훈령 개정 (2008. 8.) |
| 15 | ○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주요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- 공공녹지 확보기준, 임대용지 확보비율 등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・개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및 기준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 ※ 「산업입지법 시행령」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| 기준 명확화 | 시행령 및 지침 개정 (2008. 9.) |
| 16 |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및 방법 등의 법령화 택지개발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인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및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 ※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」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| 택지개발의 투명성 확보 |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(2008. 12.) |
| 17 |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법령화 지정요건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지정취소, 업무정지 등 권리제한, 의무부담을 주는 규정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※「철도안전법」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| 단체 등의 부담 완화 | 법률 및 고시 개정 (2009. 12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시항 (조차기한)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8 | ○ 종합물류업자 인증 재신청기간 제한 등 폐지 - 고시로 되어 있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부령으로 정하고, 법적 근거 없는 인증재신청 기간(6월) 제한은 폐지하며, 인증취소요건은 물류정책기본법상 요건(정기점검 3회 이상거부)과 일치 ※ 「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| 종합물류업자의 인증업무 활성화 |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(2008. 8.) |
| 19 | o 철도차량 운전자 등의 적성검사 재신청 기간 제한 규정 개선 - 법령상 근거 없이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3개월간, 검사과정 중 부정행위자·무단이탈자·검사방해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 ※「철도안전법」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| 철도차량 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제한 절차의 명확화 | 법률 및 고시 개정 (2009. 12.) |
| П. | 과도한 규제 완화 (40건) | | |
| 20 | 부두내 유휴 선석의 탄력적 운영 당초 계획과 달리 물동량이 감소한 유휴선석(선박접안장소)의 이용대상에 물동량이 급증한 동일 유형의 중량화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※ 항만운영시행세칙 | - 1 1 - 1 - 1 - 1 - 1 | 고시 개정 (2009. 4.) |
| 21 | ○ 외국인 선원 고용시 불필요한 노사합의절차 폐지 - 선주가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선주와 외국인간 계약체결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 ※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| | 고시 개정 (20011. 6.) |
| 22 | o 철도차량 성능시험과 제작검사 중복 항목 개선 - 성능시험 대상항목(56개)과 제작검사 대상항목(101개)의 중복 되는 부문을 제작검사항목에서 제외 ※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및 제작검사 시행 지침 | 검사기간 단축 및 기업비용 절감 (연 10억원) | 고시 개정 (2008. 10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3 | ○ 톤세제 적격기업 확인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- 톤세제 적격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선사별로 동일 서류를 수십~수천건 반복 제출하는 것을 1건의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 내역은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※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 요령 | 제출서류감소 (17,300 →165건) | 예규 개정 (2008. 11.) |
| 24 | o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취락에 대한 용도지역제한 개선 -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 등에 대해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도시관리 계획절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※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| | 지침 개정 (2008. 8.) |
| 25 | o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 - 복잡한 요금 결정방식을 단순화하고,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할증체계를 개선 ※「항만운송사업법」 | 기업의 자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| 인가요금 개정 (2009. 4.) |
| 26 | 100톤 미만 선박의 불필요한 서류 검토조항 폐지 모든 선박은 해운법시행규칙 상 등록신청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100톤 미만의 선박을 대상으로 지방청장에게 부여된 선박검사증서 조회의무 폐지 ※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| 행정절차 간소화 | 고시 개정 (2008. 8.) |
| 27 | 법적근거 없는 권익침해조항 폐지 선박투자회사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고시의 처벌규정은 상위 법에서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자체를 폐지 ※ 선박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 규정 | 권익침해 예방 | 고시 폐지 (2008. 8.) |
| 28 | 이 위급상황시 한정면허 선박 이용 - 응급환자 등 긴급구난을 위한 수송의 경우에는 여객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수송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 ※ 해운법 | 도서주민의 불편 해소 | 법률 개정 (2009. 4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9 | ○ 법령에 반영되어 사문화된 고시 폐지 -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확인·진단기준 및 절차 등은 이미 「해상교통안전법」에 반영되었으므로 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폐지 ※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 규정 | 기업부담 감소 | 고시 폐지 (2008. 7.) |
| 30 | o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법령에 규정 - 선박관리업 등록시 요구되는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은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※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선박관리업의 등록 관리요령 | 권익침해 예방 |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(2009. 2.) |
| 31 | o 예선선주의 예항력 시험의무를 법령에 규정 - 예선선주의 예선에 대한 예항력 시험의무는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※「항만법」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| 권익침해 예방 | 법률 및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32 |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 등 불필요한 절차 폐지 선박현대화사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협의, 승인, 서류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생 선대구조 개선사업 업무처리 요령 | | 고시 개정 (2008. 8.) |
| 33 | 국립해사고등학교 졸업자 승선의무 폐지 한국선주협회 또는 해운조합이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의 면허를 받은 업체에게 승선실습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어 삭제 ※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 규정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9.) |
| 34 | ○ 법적근거 없는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참여제한 개선 -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참여 가능조건 등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※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| 권익침해 예방 | 고시 개정 (2008. 8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5 | ○ 법적 근거 없는 선박자동화 설비기준 폐지 -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선박자동화 설비기준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을 폐지 ※ 선박자동화 설비기준 | 권익침해 예방 | 고시 폐지 (2009. 11.) |
| 36 | o 예선(曳船)에 부과된 소화설비 기준 법령화 - 법령에 규정된 예선의 소화설비기준 외에 안전상 필요한 기타 소화설비기준을 법령에 규정 ※「항만법 시행규칙」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| 소화설비 기준 명확화 |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(2009. 6.) |
| 37 | 화물자동차 대폐차(代廢車) 허용기준 규정의 개선 법정 기준인 차령 외에 법적 근거 없는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, 적재량・총중량 기준 등은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될 수 있는 대폐차에 대한 추가기준이므로 삭제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령에 규정 ※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화물자동차 대・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 |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 | 법률, 시행령 및 고시 개정 (2009. 6.) |
| 38 | 법적근거 없는 외국인 송입업체 등록취소 사유 삭제 외국인 송입업체가 선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때등의 등록취소사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 ☞ 송입업체: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위탁수행자 ※ 외국인선원관리지침 | 권익침해 예방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39 | ○ 실시계획 미신청시 항만공사 허가 취소제도 개선 - 항만공사 허가 후 1년 내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 므로 법령에 규정 ※ 「항만법」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| 권익침해 예방 | 법률 및 고시 개정 (2009. 6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0 | o 항만공사 착수관련 의무 위반시 공사허가 취소제도 폐지 - 항만공사 착수신고서 제출의무 및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규정 ※「항만법」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| 권익침해 예방 | 법률 및 고시 개정 (2009. 6.) |
| 41 | ○ 민원 조사 및 허가 취소제도 개선 - 민원 제기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피허가자를 조사한 후 허가권자에게 취소를 요구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 ※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 |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42 | ○ 인중종합물류기업의 인증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완화 - 일률적으로 매 2년마다 수행하는 정기검사(서면조사+현장검사)를 서면조사후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만 현장검사토록 개선 하고, 관련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정비 ※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| 기업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(연 5억원) | 고시 개정 (2009. 12.) |
| 43 | 철도차량 검사의 부적합 판정 규정 정비 제작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모든 시험 항목을 2배수 실시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정비 ※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및 성능시험 시행지침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0.) |
| 44 | o 항만보호구역 상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교육 - 해운항만청의 출석교육 방식에 의한 보안교육은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출석 등의 불편방지를 위해 폐지 ※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 | 기업불편 해소 | 지침 폐지 (2008. 9.) |
| 45 | 건설사업관리자 등 선정시 해외학위 취득 가점 개선 선진기술도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외국어우수자, 해외학위취득자의 가점 규정을 삭제 ※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치시층 (조치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6 | ○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- 공정만료 전 감리원이 교체될 경우 감리용역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,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감리원의 퇴직 등은 감점대상 에서 제외토록 개선 ※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| | 고시 개정 (2008. 11.) |
| 47 | o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- 총 벌점이 작은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이 높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벌점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※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| 부실벌점산정의 형평성확보 | 시행규칙 개정 (2009. 12.) |
| 48 | ○ 건설부자재 생산업자에 대한 과도한 공장점검 개선 - 레미콘・아스콘 생산업자에 대한 사전・정기・특별・일일 지도점검 중 일부 불필요한 일일 지도점검 항목 삭제 및 특별점검 요건 구체화 ※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| 기업활동 촉진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49 | ○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내화구조 인정제도 개선 - 법령에 근거 없는 내화구조 인정업자에 대한 공장 등의 확인 점검 및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고, 기업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서류제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 영업비밀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 ※ 「건축물의 피난・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|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| 부령 및 고시 개정 (2009. 3.) |
| 50 | ● 불합리한 개발부담금 부과・징수제도 개선 -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대상 사업규모 이하로 사업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※ 개발부담금 부과・징수 업무처리규정 | 기업부담 경감 | 훈령 개정 (2008. 8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1 | ○ 내항해운 여객사업 면허시 특수사항 추가 개선 - 내항해운 여객사업자에 대한 면허시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특수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※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 | 권익침해 해소 | 고시 개정 (2009. 2.)) |
| 52 | ○ 선박의 입·출항 허가대상 명확화 - 선박의 입·출항 허가는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※ 「개항질서법」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·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| 권익침해 예방 | 법률 및 훈령 개정 (2009. 6.) |
| 53 | o 범선의 부력 확인방법 개선 - 범선의 부력 확인을 '실제 진수하여 검증하는 방식'에서 "계산에 의한 방식으로도 확인" 가능토록 전환 ※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2) |
| 54 | ○ 범선의 선원실 높이제한 완화 - 범선의 제작형태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높이를 현행 1.8미터에서 1.4미터(도입선은 1.2미터)미만 등으로 변경 ※ 선박 설비 기준 |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55 | o 내수면 운항 여객선의 풍압기준 완화 - 내수면의 경우 풍압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수면 운항 여객선 대해서는 모든 여객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풍압 기준(27m/s)을 15m/s로 완화 ※ 선박 복원성 기준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56 | 카페리 화물선 내화구획에 수동폐쇄형 문 설치 허용 소형 카페리 화물선의 내화구획에 자동폐쇄형 문 대신 수동 폐쇄형 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※ 선박 방화구조 기준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7 | o 감리업무 포기를 이유로 하는 감리자 지정신청자격 제한 등 폐지 - 법적 근거 없는 감리자 교체 및 지정신청제한 규정을 삭제 하고,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 ※ 「주택법 시행령」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| 감리자 관리절차의 적정화 | 시행령 및 고시 개정 (2009. 6.) |
| 58 | ○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비 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에서 3년마다 받도록 한 특수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고시에서 1년 또는 2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검사기간 개선 ※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| | 시행규칙 및 훈령개정 (2008. 12.) |
| 59 | o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법령화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과 다르게 규정 된 점용허가 기준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법령에 규정 ※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| 점용허가기준 명확화 | 시행령 및 고시 개정 (2009. 12.) |
| ш. |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(22건) | | |
| 60 | 자가이용 전세편의 공항이용 제한 개선 자가이용 전세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이용 전세편도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(20인승 규모의 소형항공기)되도록 개선 ※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| 기업활동 촉진 (인천공항 이용, 연평균 약2,300명의 기업인에게 혜택) | 훈령 개정 (2008. 12.) |
| 61 | ○ 수협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폐지 - 육안, 청각에 의존하는 점검으로 실효성이 없고, 출어시간 만지연시키는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을 폐지하고, 이로 인한선박안전은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확보 가능 ※「선박안전조업규칙」(농림수산식품부 등 부령) 선박통제규정(국방부, 농림수산식품부, 해경 합동 훈령) 어선안전조업규정(농림수산식품부 고시) | |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2 | o 선박 신호포판(신분증)제도 폐지 - 간첩선 침투 예방을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신호포판제도를 폐지 ※「선박안전조업규칙」(국방부, 농림수산식품부, 해경 합동) 선박통제규정(국방부, 농림수산식품부, 해경 합동) | 정부예산 절감 (연 3천만원) | 합동부령 및 훈령 개정 (2010. 6.) |
| 63 | o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요건의 개선 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 ※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| 무주택근로자의 주거 안정 | 훈령 개정 (2008. 12.) |
| 64 | 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제도 개선 금융기관 대출제도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인제도를 보증인 제도로 변경 ※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(생활자금의 대출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 시행령 개정시 반영)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|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혜택 ('06년말 기준, 대출받은 유자녀 11,000여명) | 예규 개정 (2008. 12.) |
| 65 | 외국선박 사용신청서 제출기한 단축 현재 사용예정일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선박 사용 신청서 제출기한을 14일 전으로 단축 ※ 내항화물운송시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8.) |
| 66 | ○ 중고자동차 성능・상태점검 보증제도 개선 - 성능・상태에 대한 허위점검시 20배 이상 배상토록 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삭제 ※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| 국민불편 해소 | 지침 개정 (2009. 3.) |
| 67 | o 철도 공안업무 관련 참고인등 비용 지급제도 개선 - 참고인등의 출석을 위한 여비지급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(KTX이용 포함)하고, 출석 진술자 모두에게 일당 지급 ※ 참고인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등 급식 규칙 | 참고인 불이익 해소 | 훈령 개정 (2008. 8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8 | 이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택시증차 제한규정 개선 - 행정처분 현황을 증차인가 제한 및 불이익 처분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중복 및 포괄적인 규정을 개선 ※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| 기업부담 경감 | 훈령 개정 (2008. 12.) |
| 69 | 실효성 없는 옥외주차장 관련 그늘식재 규정 개선 획일적으로 주차대수 5대마다 1주의 그늘식재를 하도록 하여 주차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주차동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옥외주차장 그늘식재 관련규정을 삭제 ※ 조경기준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70 | ○ 사업용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를 완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- 사업용 토지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 기간(4년) 중에 부도 등으로 기업 어려움 발생시에도 매각 불가 - 이용의무 면제사유를 시・군・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| 기업 경영 위기 해소 | 시행령 개정 (2008. 7.) |
| 71 | ○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제한 개선 - 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 개정('07.4.12.) 내용에 맞추어 '89.1.25.이후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 ※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| 무허가 주택세입자 권익 보호 | 고시 개정 (2008. 7.) |
| 72 | o 기업물류비 계산의 일반기준과 간이기준 적용방법 개선 - 일반기준과 간이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각 적용 대상별로 요건을 정하여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선 ※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 | 소형물류사업자의 부담 해소 | 고시 개정 (2009. 6.) |
| 73 | ○ 표준임대료 세부항목 중 화재보험료 정산기준 도입 - 임대사업자와 보험사가 입주 2년여 전에 계약하여 실지급액 반영이 곤란한 화재보험료를 차액 정산토록 해당 공공기관 (지자체・주공・지방공사 등)의 내부규정 개정 또는 공문협조요청 ※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|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| 내부규정 등 개정 (2008. 12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4 | o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개선 - 임대계약자 사망시 법정영세민 등 영구임대주택 자격 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계약을 해제토록 해당 공공기관(지자체, 주택공사, 지방공사)의 내부규정 개정 ※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|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단축 | 내부규정 등 개정 (2008. 12.) |
| 75 | o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기 규정 정비 -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 및 취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업무처리기준은 폐지 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| 불필요한 민원 해소 | 법률 개정 (2008. 12.) |
| 76 |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서류작성 방식 개선 시행령과는 다르게 6층 이상~1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 안전확인서에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거나 필요시 시행령에 규정 ※「건축법 시행령」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지침 | | 시행령 및 지침 개정 (2008. 12.) |
| 77 | o 예인선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- 추가요금을 30분 단위로 부과하고 야간 할증요금에 주간사용 시간도 포함하는 불합리한 예인선 사용료 부과방식을 '예선 운영협의회'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개선 ※「항만법 시행령」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 요령 | | 시행령 및 고시 개정 (2008. 10.) |
| 78 | 비현실적인 기자재 시험규정 정비 불명확한 낙하시험 등의 측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파괴 검사를 도입 낙하시험 등 기자재 시험이 재료시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낙하시험 등을 면제 ※ 강선의 구조기준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9 | 이 해수욕장 수질조사 시기 현실화 - 기후변화로 해수욕장 개장일이 변화(7월 → 6월)된 점을 고려하여 수질조사 시기를 조정 (7월 10일 → 6월 20일) ※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| 대국민 서비스 향상 | 훈령 개정 (2008. 12.) |
| 80 | 외항운송사업 폐업시 사유서 제출의무 규정 삭제 외항운송사업 폐업시 명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고 토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 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※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등 사무처리 요령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9. 2.) |
| 81 | 시정지시 위반에 따른 골재판매 금지제도 법령화 시정지시 위반시 장관이 시정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골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이 므로 법령에 규정 ※「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| 기업부담 경감 |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(2009. 6.) |
| IV. | 경쟁제한 해소 (13건) | | |
| 82 | o 철도차량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의 독점요인 개선 -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반영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근거 조항 및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고, 기술인력·장비 등에 따라 지정되도록 개선 ※「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| 경쟁 촉진 |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(2008. 12.) |
| 83 | 전용철도에 대한 종합안전심사 부담 완화 시멘트 공장 등 기업내부에서 운영하는 전용철도는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고, 나머지는 서류심사로 대체. 단, 철도사고발생시에는 종합심사를 받도록 개선 ※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| 기업부담 경감 | 고시 개정 (2008. 6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84 | 강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선 감리전문회사 선정은 향후 해당공사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만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, 공동수급의 경우 부여하는 '가점제도'는 삭제 ※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| 기업활동 활성화 |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85 | ○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제한의 개선 - 자연환경보전지역・도시지역,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의 경우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만 지정요청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※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|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참여 활성화 | 고시 개정 (2008. 9.) |
| 86 | 항공관제 종사자의 음주측정 관리방식 개선 항공관제 종사자의 업무개시 전 음주사실 자진신고제도를 상시적인 의무제도로 전환 ※ 음주측정 운영에 관한 지침 | 승객의 생명 보호 | 훈령 개정 (2008. 12.) |
| 87 | ○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및 시행자 범위의 법령화 - 법적 근거없이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기능 요건인 '나지50% 충족' 및 '취락지구,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' 등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 ※「도시개발법」또는 시행령 개정 | | 법률 개정 (2009. 7.) |
| 88 | o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 조항 개선 - 해운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정기선사의 담합에 대해 서도 독점규제법을 적용토록 개선 검토 ※「해운법」 |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| 법률 개정 (2009. 12.) |
| 89 | 해상용 등명기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 보장 LED-200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상용 등명기를 성능이유사한 표준기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※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| 기업체의 기자재 선택권 확대 | 고시 개정 (2008. 10.) |

| 순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차사항 (조차기한)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90 | o 항로표지 장비 검사기관 확대 -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검사기관을 항로표지협회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※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검사기준 | 기업의 선택권 확대 | 고시 개정 (2008. 11.) |
| 91 |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건축비 가산비용 부가사유 법령화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가 분양가격 중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므로 법령에 규정 ※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신청 등에 관한 규칙」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| 건축비의 투명성 제고 | 시행규칙 개정 (2008. 12.) |
| 92 | 참여감리원에 대한 연령제한 제도 폐지 감리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리원의 나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령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※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| 차별 제한 예방 | 고시 개정 (2009. 12.) |
| 93 | 추첨방식에 위배된 택지 우선 공급제도 정비 택지공급은 법령상 추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모집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하거나 법령에 규정 ※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| 특혜 사전 제거 |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 (2008. 12.) |
| 94 | o 우수 화물운수업자 인증 재신청기간 제한 등 상위법령화 - 영업활동에 제한이 되는 인증 재신청기간의 6개월 제한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 ※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|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| 시행규칙 개정 (2009. 6.) |